

4. 정년보장교원 업적평가기준 세부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정년보장교원의 승급심사를 위한 연구업적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지침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재직 중인 정년보장교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적용시기) 정년이 보장된 시점으로부터 한다.

제4조(평가위원회) 정년보장교원 연구업적평가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제3조(평가위원회) 규정을 준용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.

제5조(평가영역) 교원업적평가는 연구업적으로 한다.

제6조(평가영역 인정점수) 각 업적의 인정점수는 교원업적평가기준 시행세칙을 따른다.

제7조(업적평가의 최소기준) 정년보장교원은 정년보장교원 임용 후 매4년마다 연구업적평가를 통해 승급할 수 있으며 연구업적평가 기준 및 점수는 아래와 같다.

<정년보장교원 연구업적 기준 및 점수표>

승급심사대상	최저연수**	최저 논문 편수*	연구 업적 점수
교수D-->C	4년	4편	40점
교수C-->B	4년	4편	40점
교수B-->A	4년	4편	40점

* 최저 논문 편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지)이상 게재 논문으로 한다.

** 업적평가 시 기준 점수 불충족 교원에게 1년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5년차 최저 기준 점수는 논문 편수 5편, 연구업적 점수 50점으로 산정한다.

제8조(평가절차) ① 정년보장교원은 매4년마다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급심사를 받을 수 있다.

② 최종 평가결과는 교무입학처장이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하며 교원인사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9조(이의신청) 정년보장교원 연구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7조(이의신청)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0조(평가의 활용) 평가 결과는 교수 D, C, B, A 승급 및 연봉에 반영 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

② (경과규정) 이 규정은 정년이 보장된 교원에게 적용한다.

<별지서식 1호>

정년보장교원 업적자기평가서 (년도)

기간 : 20 년 1월 1일 ~ 20 년 월 일
(4년)

소 속 :

직 급 :

성 명 : 교수

제출일 : 20 년 월 일

가톨릭꽃동네대학교

※교수님께서 “정년보장교원 업적평가기준 세부지침 ”에 의거 직접 “산출점수” 란에 점수를 기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단, 평가 란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기록함)

※교원업적자기평가는 반드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.

I. 연구업적

1. 논문

발간 년/월/일	학술지명	논문 제목	발행기관 권/호/페이지	학술지종류 <저명/심사/교내>	연구자수 <책임>	산출 점수	평가
계							

2. 단행본 및 기타(저서 및 역서, 편서 등)

구분 <저서/역서/편서>	출판 년월일	제목(책제목)	출판사명	저자수 <책임>	산출 점수	평가
계						

3. 학술활동

가. 학술발표, 토론 등

구 분	년월일	학회 또는 강의 명칭	역할	산출점수	평가
계					

나. 학술수상

명 칭	수여일자	수여기관	포상의 의의	산출점수	평가
계					

4. 연구보고서 및 연구비 수혜관계

연구인 원수 <책임>	연구제목	수혜기관명	연구기간	액수	산출점수	평가
계						

5. 총 점(교원업적평가위원회 작성)

구 분	최저연수	최저 논문 편수*	연구업적 점수
산출점수	4년		
충족여부	충족/미충족	충족/미충족	충족/미충족

*최저 논문 편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지) 이상 게재 논문으로 한다.

<별지서식 2호>

정년보장교원 연구업적평가 이의 신청서

성 명	
이 의 내 용	
◦ 평가 항목	
◦ 내 용	

※ 평가항목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상기와 같이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.

20

신청인 : (서명)

가톨릭꽃동네대학교 교무입학처장 귀중